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38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현정·모경종·민병덕

민형배 · 박상혁 · 이광희

이상식 · 정성호 · 정준호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예산과 결산, 준비금의 적	제8조(예산과 결산, 준비금의 적
립 등) ① (생 략)	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	②
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	
보고서, 재산목록, 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	
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	
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